본건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조건("공급조건") -대한민국 버전

1. 범위

1.1 본 공급조건에서, "**공급(Supply)**"이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구매자에 대한 공급자의 공급을 의미한다; "**구매자(Buyer)**"란 본건 제품을 구매하거나 본건 서비스를 득하는 당사자로 문맥상 허용되는 경우 그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공급자(Supplier)**"란 구매주문 상에 지명된 Edwards Group Company 를 의미한다; "**구매주문(Purchase Order)**"이란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신청한 주문을 의미한다; "**본건 생산품(Product)**"이란 본건 서비스의 대상이 될 구매자가 소유한 제품을 의미한다; "**구매가격(Purchase Price)**"이 본건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한 대금을 의미한다; "**본건 제품(Goods)**"이란 공급자에 의해 구매자에게 공급된 제품, 소비재, 장비, 장비부속품,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제품과 자재(본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교환품 포함)를 의미한다;; "**본건 서비스(Services)**"란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교환 서비스(Service Exchange)"**란 구매자에 의해 공급자에게 발송된 제품을 같은 유형의 신규 또는 리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본 공급조건은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를 위한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공급자와 구매자가 특정한 조건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구매 조건 또는 구매주문이나 기타 문서 상에 배서되거나 이와 함께 교부되거나 이에 포함된 모든 조건에 적용되며 이에 우선한다. 본 공급조건에 대한 변경은 공급자에 의해 수권된 자가 적법하게 서명한 서면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모든 구매주문은 공급자의 수용을 조건으로 한다.

1.3 구매주문과 본 공급조건은 수용 시 공급을 위한 구매자 및 공급자 간의 계약("**계약**")을 구성하고 공급과 관련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2. 가격견적

2.1 (a) 표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견적가격은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 일간 유효하며 (b) 비표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견적가격은 추정 가격이며 공급자의 (i) 운송, 노임 및 지침 비용; (ii) 위험물질 처리 및 위험물질 관련 법률 준수 비용; (iii) 처리, 인도 및 배송 비용; (iv) 에너지 또는 연료 비용 및/또는 (v) 견적 시기와 공급 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기타 공급 비용 또는 공급자의 이행 관련 비용의 상승 시 통지 없이 증가될 수 있다.

2.2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 연방, 주 및/또는 지방세, 관매세 및/또는 사용세, 부과금 및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성격의 관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조세("조세")를 제외한 것이다. 모든 조세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해당 조세당국이 수용 가능한 면제증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지급한다.

3. 검사 및 테스트

3.1 구매자에게 공급되기 전 모든 본건 제품에 대하여 공급자에 의한 검사가 시행되며 공급자는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테스트를 행한다.

3.2 구매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테스트 또는 시연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구매자가 14 일 통지 후 당해 테스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없이 테스트를 행하고 본건 제품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공급 및 운반

4.1 공급자는 구매주문 상에 요청된 시간 이내에 및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4.2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적은 공급자의 생산 및/또는 유통 시설로부터 FCA(Incoterms 2010) 조건으로 이루어 진다. 다른 인도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운송을 주선하고, 구매가격에 따라 운송 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본건 제품을 부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운송업자에게 본건 제품을 인도함으로써 본건 제품의 손상 또는 손실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구매자가 본건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가격에 따라 적합한 운송보험을 공신력 있는 보험사에 들어야 하고, 구매자는 공급자가 본 보험에 추가적인 피보험자로 지정되는 것을 보장한다. 본건 제품에 대한 손상 또는 손실의 위험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자는 본건 제품의 손실이나 손상 실체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한다.

4.3 구매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인도일 또는 공급자로부터 본건 제품의 선적 준비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본건 인도일")에 본건 제품을 인도받아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본건 제품 선적준비 완료 통지 즉시 공급자에게 인도 관련 지시사항을 제공한다.

4.4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본건 제품을 인도받는 구매자의 의무는 구매자의 중대한 의무를 구성한다.

4.5 본건 제품이 공급되는 곳이 새로운 곳일 경우, 구매자는 선적예정일로부터 6 주 전에 서면으로 본건 인도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재량에 따라 연기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본 공급조건에 따른 다른 구제방법에 관계없이, 본건 인도일로부터 14 일 이상 인도가 연기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매월 구매가격의 최소 2%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구매자는 해당 청구서의 발행일로부터 30 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본건 인도일의 연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의 본건 인도일로부터 3 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 12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3 개월이 만료되면 공급자는 구매자의 비용으로 본건 제품의 보관 장소를 선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건 제품을 인도할 공급자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구매자는 본건 제품의 손상 또는 손실의 위험과 구매가격 지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6 본건 제품이 공급되는 곳이 새로운 곳이 아닌 경우 또는 서비스 이후 본건 생산품이 반환되는 경우, 구매자는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의 선적 준비완료 통지를 받는 즉시 공급자에게 인도 지시를 하여야 한다. 선적 또는 집하가 그와 같은 통지로부터 14 일을 초과하여 연기되는 경우, (i) 공급자는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의 보관장소를 정하여 보관할 수 있고, (ii)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14 일의 기간당 구매가격의 2%에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구매자는 해당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iii)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을 인도해야 할 공급자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구매자는 본건 제품과 본건 생산품의 손상과 손실에 대한 위험과 구매가격의 지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7 교환 서비스의 경우, 구매자는 관련된 구매주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교환할 제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선적해야 한다. 구매자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i)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반환될 제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동안 매 14 일의 기간마다 구매가격에 2%에 비율로 계산된 미반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반환 보상금은 공급자에 의해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ii) 본건 제품의 반환 지연이 관련된 구매주문일로부터 3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주문 또는 교환 서비스와 관계된 구매주문의 일부를 종료할 수 있고, 구매자는 동등한 사양의 새로운 본건 제품 공급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교환 서비스를 위해 구매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한다. 구매자는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 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8 당사자들은 위 본 구매조건에 따른 보상금과 다른 비용들이 구매자가 본건 인도일에 본건 제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자가 입게 될 손실과 비용을 진정하게 사전 추정한 것임을 합의한다.

4.9 본건 생산품을 공급자가 수령하였는데 그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구매주문이나 기타 서면이 공급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그 선택에 따라, 본건 생산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보관, 반환 및/또는 폐기 비용을 청구하고, 구매자는 이를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4.10 구매자는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고 보증한다. 또한 구매자는 본건 제품과 본건 제품과 관련된 제품을, (1)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라 금수조치된 국가에, 그리고/또는 (2) 수입 또는 수출/재수출 라이선스, 허가 또는 증명이 필요한 국가에 수입 또는 (재)수출에 앞서 그와 같은 라이선스, 허가, 또는 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보증한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공급자의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수입 라이센스 및/또는 허가 또는 증명과 함께 모든 구매주문에 첨부한다. 공급자는 (1) 본건 제품 또는 그와 관련된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 (2) 구매자의 본 조항 또는 법률 위반, 또는 (3) 관계 당국의 수출입 라이선스 또는 허가의 지연 또는 거부의 경우, 본건 제품 또는 그와 관련된 제품의 인도지연 또는 인도불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인도의 조건으로 사전에 공급자에게 본건 제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사용, 및/또는 최종사용자 또는 거래 중개인의 신분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명된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구매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려고 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11 본건 제품은 구매자가 "하나의 탁송(one consignment)"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대로(as available) 공급되며 대가가 지급된다. 각 선적은 별도의 독립적인 거래로 간주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 또는 구매자가 계약에 의한 구매자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충족되지 않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 관련 선적을 중단할 수 있다.

4.1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 일체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다고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손상된 본건 제품 및 그 포장은 공급자에 의한 검사를 위해 반드시 보관되어야 한다.

4.13 공급자는 통지 없이 본건 제품의 명세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동 변경은 본건 제품의 이행, 그 형식 또는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14 서비스, 설치 및 커미셔닝은 본건 제품의 구매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4.15 구매자는 본건 생산품의 선적, 폐기, 디커미셔닝에 대한 받음을 책임진다. 공급자는 해당 생산품이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받견한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5. 지급

5.1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은 대한민국 원화로 명시되며 이루어진다. 구매자가 다른 통화를 명시하는 경우, 공급자는 견적 시기 및 구매주문의 수용 사이에 발생하는 환전 통화와 대한민국 원화 간의 환율 상의 변동을 보상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5.2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대하여 어떠한 공제도 없는 전액 지급이 인보이스 일자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보이스는 보통 본건 제품의 인도일자(또는 인도 예정일) 또는 본건 서비스의 완료 일자에 발행된다. 구매자는 인보이스 일자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보이스에 관한 분쟁을 제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인보이스는 구매자에 의해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급 시기는 필수적 요건이다.

5.3 모든 구매주문은 선적 전 신용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공급자가 언제든지 구매자의 재무 상황이 이전에 명시한 바와 같은 지급조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급자는 충족되지 않은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확인필 취소불능 은행 발행 신용장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5.4 어떠한 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공급자는 기타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통지 없이 구매자에 대한 모든 추가 물품 인도를 중지하거나 지급 기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정 지연이자율 또는 동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 연 8%를 더한 비율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5 구매자에 의해 지급될 금원은 어떤 계약에 의하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할 금원으로 공급자에 의해 상계될 수 있다.

6. 소유권의 보유

6.1 제 6.2 조를 조건으로, 본건 제품은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해당 본건 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대금을 완전히 조건 없이 지급할 때까지 공급자의 자산으로 유지된다.

6.2 본건 생산품의 소유권은, 본건 생산품이 교환 서비스의 대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본건 생산품을 수령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매자에게 있다.

6.3 구매자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본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의 사용을 위해 구매자가 소유한 탁송 재고, 재고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6.4 구매자의 해당 대금 전액 지급 시까지, 본건 제품은 공급자의 수탁자로서의 구매자에 의해 보유되며 구매자 또는 제 3 자의 기타 제품 일체와 별도로 공급자의 자산임이 즉시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공급자의 비용 부담 없이) 변경되지 않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된다.

6.5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아래 제 12 조 상의 해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및 구매자에 대한 통지 후 공급자가 본건 제품이 보관 중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구매자의 부지에 들어가거나 당신 제품 및 본건 제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6 본건 제품의 인도 및 구매가격의 전액 지급 이전에는, 구매자가 본건 제품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하고, 공신력 있는 보험사에 본건 제품에 대해 구매가격을 보장하는 적합한 보험을 가입한다.

7. 지적재산 및 기밀

7.1 공급자는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위해 개발 또는 생성되고 계약에 의해 공급자가 공급한 노하우, 기술정보, 도안, 명세서 또는 문서, 아이디어, 개념, 방법, 절차, 기술 및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이권과 그 소유권을 유지한다. 동 정보 일체는 구매자에 의해기밀로 유지되며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동 정보가 공공의 지식이 되거나 공공의 지식이 될 때까지 제 3 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동 정보는 계약에 의해 공급된 본건 제품 사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구매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

7.2 공급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한 특허, 저작권, 영업기밀, 의장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공급자가 보유하며 구매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또는 공급과 관련한 기술정보, 노하우, 도안 및 명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공급조건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상의 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득하지 않는다.

7.3 공급자 및 공급자의 관계회사의 상표 및 상호는 공급자에 의해 본건 제품, 본건 서비스 또는 관련 문서에 적용된 것 방법 이외로는 구매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

8. 보증

8.1 장비 및 관련 부속물, 예비품 및 부품으로 구성되는 본건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A. 공급자는 (i) 본건 제품이 적합한 목적을 위해 구매 및 사용되었고, (ii) 운영 지시사항에 따라 운영 및 유지되었으며 (iii) 공급자에 의해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제품의 결함이 본건 제품 선적일 12 월 이내에 발생하고 (iv) 제 8.3 조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정상적이고 적절한 사용 및 유지 조건 하에서 자재 또는 제작 상의 결함(정상적인 마모 및 소모품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에 공급된 본건 제품을 공급자의 재량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공급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기로 한다.

B. 수리 또는 교체된 본건 제품(교환 서비스의 대상인 본건 제품도 포함)에 대한 보증은 위 제 8.1A 항에 명시된 만료되지 않은 보증기간 동안 지속된다.

C. 공급자는 수리 또는 교체 대상 본건 제품이 공급자의 서비스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위치한 경우 공급자 서비스 센터로의 및 그로부터의 본건 제품의 수송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D.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은 구매자의 비용으로 해야 할 수리 또는 교체될 본건 제품의 설치 또는 제거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8.2 본건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A. 공급자는, 본건 서비스가 합리적인 기술과 주의를 다하여 공급자의 서비스 정책과 관행에 따라 숙련된 방식으로 이행됨을 보증한다 사전에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자신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B. 본건 서비스의 이행 후 파손이나 고장(정상적인 마모 및 소모품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동 파손이나 고장이 (a) 본건 서비스 이행 당시 구매자에게 통지된 보증 기간 동안(또는 이러한 기간이 구매자에게 통지되지 않고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완료일 90 일 이내에); (b) 정상적인 사용 중; (c) 공급자가 본 공급조건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공급자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럽게(공급자가 결함이 있다고 주장되는 서비스를 검사하고 파손이나 고장과 관련한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진 후) 구매자가 증명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본건 서비스를 시정 또는 제이행하거나 서비스 대상 제품을 교체하거나 해당 서비스 비용을 환급한다. 단, 이는 (i) 해당 파손이나 고장이 구매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계약 위반, 과실, 공정 반응, 초과공정 빌드업(excessive process build ups) 또는 사고나 구매자가 공급자의 권고 유지 일정과 유지 관련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야기되거나 이에 기인되지 않았으며 (ii) 제 8.3 조가 충족된 경우에 한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건 생산품에 대한 서비스 과정 중에 교체되지 않는 본건 생산품의 구성요소는 서비스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 구매자는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건 생산품을 지정된 공급자 서비스센터에 선적할 책임이 있다. 공급자는 본건 생산품이 공급자가 서비스센터를 갖고 있지 아니한 국가에 있는 경우, 본건 생산품을 공급자 서비스센터에서 구매자에게 되돌려 보낼 선적비용을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가 공급자의 보통의 선적방법보다 비싼 화물운송 수단을 요구할 경우,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지불한다.

D. 본 조에서의 보증은 구매자의 비용으로 해야 하는 본건 생산품의 설치 또는 제거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E. 위에서 명시적으로 보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구매자는 본건 서비스로 인한 모든 위험을 인수한다. 본 공급조건에 명시된 어떠한 사항도 본건 서비스 대상 본건 생산품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오류가 시정될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급자, 그 대표자 등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 지는 진술은 공급자의 보증을 구성하지 않는다.

8.3 제 8.1 조 및 제 8.2 조에 의한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a) 청구는 우선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된다; b)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생산품은 공급자 이외의 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이외에 수리 또는 변경되지 않았다; c) 공급자가 제조한 것이 아닌 장비 및 관련 부속품, 예비품 및 부품의 경우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의 책임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사에 의해 공급자에게 주어진 보증의 혜택을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d) 교체의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이 있는 본건 제품을 공급자의 교체 제품 인도 10 일 이내에 공급자에 반환한다; e) 해당 결함이 구매자의 명세서 또는 지시사항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및 g) 구매자가 구매가격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합의된 지급일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

8.4 공급자는 본 제 8 조에 의한 공급자의 책임을 구매가격을 삭감하거나 이를 반환하고 본건 제품을 회수하거나 대변전표(credit note)를 발행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

8.5 위에서 명시적으로 보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관련 법률과 규정에 포함된 모든 보증, 조건 및 기타 조건들은 법률에서 허용된 최대 범위까지 제외된다.

9. 책임 및 면책

9.1 제 8 조를 조건으로, 다음 규정들은 a) 본 공급조건의 위반 또는 b) 본 공급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또는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과실을 포함하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한 구매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일체(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 포함)를 명시한다.

9.2 본 공급조건의 어떠한 사항도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a) 공급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이나 인적 침해 또는 (b) 사기 또는 부당한 허위진술 또는 (c) 법률상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손해배상책임.

9.3 제 9.4 조를 조건으로,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제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에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의 총액은 계약에 의해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4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직간접적 또는 결과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손실, 이익의 손실, 사업의 손실, 영업권의 소모(depletion of good will), 기대이익의 손실, 평판의 손상, 매출의 감소, 생산 중단 및 제 3 자에 의해 구매자에게 제기된 손해, 또는 어떤 경위로든 본 계약과 관련된 결과적 손해 보상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5 구매자가 본 공급조건에 의거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가 이용 가능한 기타 구제책에 추가로 정식절차 등을 통한 해당 의무와 관련한 공급자의 권리 시행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지급한다.

9.6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공급자는 계약, 불법행위, 허위진술, 이득의 반환(restitution), 또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예정된 이행의 결과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7 구매자는 구매자의 본건 제품의 사용 또는 구매자의 본 공급조건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본건 제품의 공급 및 본건 제품의 후속 사용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청구, 요청, 책임, 손해 또는 손실 및 모든 이자, 과징금 및 법률 및 기타 전문가 비용과 경비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하고 보호한다.

10. 불가항력

10.1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사태로 인한 선적 지연 또는 선적 불이행을 포함하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2 이러한 지연의 경우, 선적 또는 이행 일자는 공급자의 요청 시 지연 사유에 의해 손실된 시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달리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기된다.

11. 취소

11.1 구매자는 본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선적예정일로부터 6 주 전에 서면으로 본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재량에 따라 취소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공급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손상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표준적인 제품의 경우 그 구매가격의 15%, 비표준적인 제품의 경우 그 구매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해당 인보이스의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1.2 공급자에 의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본건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구매자는 취소 당시까지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행된 작업 및 구매 또는 제공된 자재 일체의 비용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공급자에게 구매가격의 15%에 상응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보상한다.

11.3 당사자들은 본 조에 의해 공급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구매자가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경우 공급자가 입게 될 손실과 비용을 진정하게 사전 추정한 것임을 합의한다.

12. 해지

12.1 구매자가 파산행위를 행하거나 파산 회사로 관리인을 지명하거나 구매자에 대하여 행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구매자가 청산하거나 도산법에 의한 유사한 사태가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제건이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계약에 의해 공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대금은 즉시 지급되부가 발생하며 공급자는 이전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2 구매자가 본 공급조건의 주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구매자에 대한 이에 대한 서면 통지 후 14 일을 초과하여 이를 지속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요력을 가지도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3 구매자가 본건 인도일로부터 3 개월 내에 본건 제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다른 권리의 손상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 본건 제품을 폐기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표준적인 제품) 구매가격의 15% 또는 (비표준적인 제품) 구매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구매자는 해당 인보이스의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조에 의해 공급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구매자가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경우 공급자가 입게 될 손실과 비용을 진정하게 사전 추정한 것임을 합의한다.

12.4 해지는 일방 당사자의 이전에 발생한 권리(prior right), 또는 (제 6 조, 제 7 조 및 제 9 조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존속한다.

13. 본건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구매자의 의무 및 책임

13.1 모든 본건 생산품 및 (공급자,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고객 건물) 환경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서면으로 공급자에게 통지되고 공급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용된 범위는 제외함). 공급자는 공급자의 의견으로 구매자가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만족스럽게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본건 생산품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13.2 구매자는 본건 서비스의 시작 전에 공급자가 본건 생산품의 상태와 작업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의 합리적인 의견에 의할 때, 본건 생산품이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본건 생산품이 제조자의 운영 지시서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거나 유지되지 않았거나, 본건 생산품이 너무 오래되거나 낙후되어 경제성이 없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접촉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

13.3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모든 본건 생산품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운영설명서, 도면, 테스트 인증서 및 유지보수검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13.4 구매자는 공급자 또는 그 근로자, 대리인, 또는 하청업자가 구매자의 현장 또는 구매자의 고객의 현장에서 입은 손실, 피해, 손상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면책한다. 다만, 공급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기타

14.1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의한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 또는 이전 또는 거래할 수 없다.

14.2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급조건의 어떠한 조건이나 규정도 제 3 자(당사자들 및 그들의 허용된 승계인과 양수인을 제외한 자)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

14.3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공급조건의 위반에 대한 포기는 기타 위반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공급조건에 의한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계약의 어느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더라도 잔여 조항은 적용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14.4 본 판매 조건에 포함된 어떤 것도 공급자에게 해당 법률의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4.5 본건 제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도면, 기술사항, 기술 명세서, 용량, 성능수치, 설명 및 기타 제부사항(카탈로그 또는 광고 상의 사항인지 또는 계약에 참부 또는 참조된 사항인지 여부 불문)은 공급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신의로써 공급자에 의해 명시된 것이며 허용 오차 내에서 정확하되 세부사항에 있어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제품이 구매자의 구매 목적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하도록 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이다.

14.6 구매자는 본 공급조건에 의해 본건 제품과 본건 서비스와 관련한 안전 및 교육 관련 인쇄물이 공급자에 의해 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 의해 해당 인쇄물의 사본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안전 및 교육 관련 인쇄물의 내용의 이행에 단독적 책임을 진다. 구매자는 본건 제품을 사용, 유지 또는 달리 처리하거나 본건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가 충분한 안전 및 교육 관련 인쇄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14.7 공급자는 Atlas Copco 소속이므로 구매자는 https://www.atlascopcogroup.com/en/sustainability/living-by-the-highest-ethical-standards/code-of-conduct 에서 찾을 수 있는 Atlas Copco 의 행동강령(Atlas Copco;s Business Code of Conduct)과 모든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 특히, 때때로 개정되는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2010) 및 미국의 외국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반 수뢰 및 반 부패에 관련된 모든 법률("요구사항")을 항상 준수해야 하고, 구매자는 항상 구매자의 근로자, 임원, 대표자, 하청업자 및 고객이 관련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항상 정책과 절차를 준비 및 유지하고 필요할때에는 그들에게 관련 요구사항 준수를 강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구매자를대표하는 사람이 관련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위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그를 대표하는 사람이, 관련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이를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14.8 구매자는 (1) 구매자의 비용으로 제품의 수명 종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전기 • 전자 장비 폐기물을 수집, 처리, 회수 및 환경에 안전하도록 폐기하기 또는 (2)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구매자의 비용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구매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1)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15. 준거법 및 분쟁해결

15.1 계약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며 해석된다.

15.2 구매자 및 공급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짐에 합의한다.

15.3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한 청구의 경우 구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